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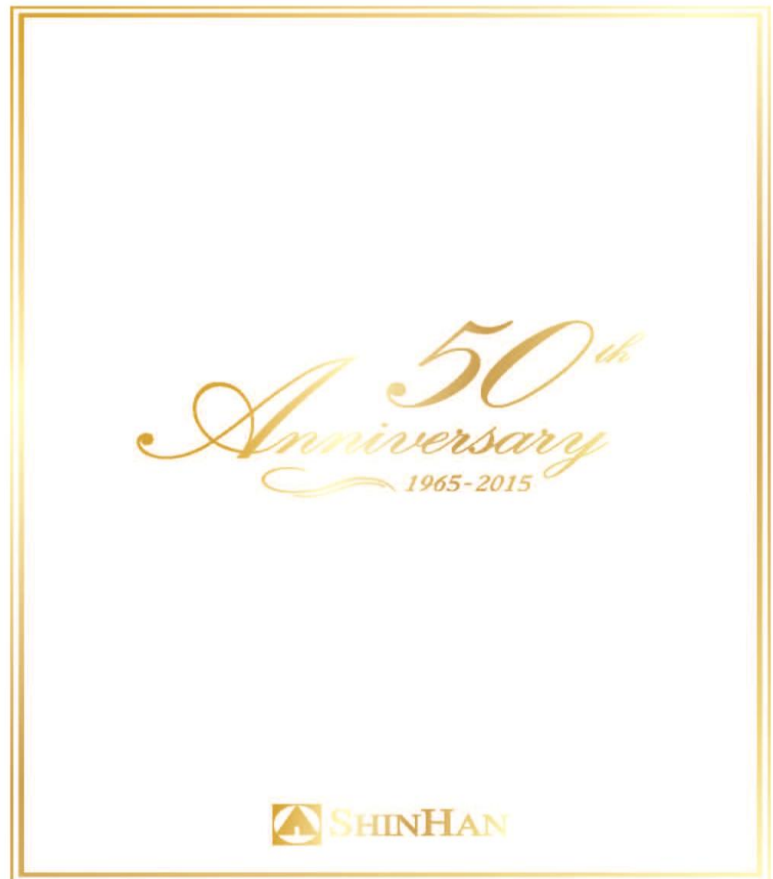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8<sup>th</sup> March 2015

- ▶ WHERE IS GRACE CHANG?:  
신한 창립 50 주년!!  
..... 2
- ▶ ABOUT WRITERS  
..... 2
- ▶ 신한만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영진 상무  
..... 3
- ▶ COVER STORY:  
3월 31일 폐기물부담금 신고 잊지  
마세요!  
..... 3
- ▶ FTA NEWS:  
FTA 역외가공 규정과 개성공단  
..... 5
- ▶ VOICES FROM THE FIELDS:  
질문의 힘  
.....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9
- ▶ CUSTOMS PRECEDENT 68  
..... 11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신한 창립 50주년!!**



**장승희**  
 대표 관세사

1965년 3월 22일 신한관세법인의 전신인 **서울통관사**가 창립되었습니다.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통관사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개인사무소에서, 합동사무소 그리고 한 지붕 다세대의 법인형태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100여명이 신한관세법인의 가족으로서 전국 7개 지역의 사무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신한관세법인 발전의 가장 큰 공신입니다. **1964년 첫 수출의 날에 기념하였던 1억불 실적은 2014년에는 5,731억불 수출까지 성장하였으니까요.**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가발,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 봉제인형 등 가내수공업 제품을 수출하던 나라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등 고가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수입하는 옥수수가루 밀가루가 쌓이던 하역항에 이제는 고급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와인, 킹크랩, 랍스터 등등이 밀려들어옵니다.

이제 신한관세법인은 새로운 50년, 즉 100주년을 바라보며 목표를 세웁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대 초. 천안문 사태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격변을 지켜보며 제시했다는 **덩샤오핑의 28자 방침**을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고(냉정관찰 冷靜觀察) 진영을 공고히 하며(은주진각 穩住陣腳) 침착하게 대응하되(침착응부 沈着應付)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도광양회 韜光養晦). 자세를 낮추고(선우수졸 善于守拙)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며(결부당부 決不當頭) 해야 할 일은 한다(유소작위 有所作爲)'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며 겸손하게 실력을 쌓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성장하느라 부족하였던 점들을 찾아 채워 넣고 실력을 깊고 넓게 쌓으며 진실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곳곳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든 고객의 사랑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부터 함께 나아가실 고객께 한발 더 발전한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호 Voice from the Fields는 **하나은행 서일범 지점장**의 '질문의 힘' 입니다. 성공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3월 31일 폐기물부담금 신고 잊지 마세요!



김혜연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mailto: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관리사

FTA News-

FTA 역외가공 규정과 개성공단



이동현 관세사  
[leedh@customsservice.co.kr](mailto:leedh@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Voices From The Fields-

질문의 힘



서일범 지점장  
[ilbeomseo@hanafn.com](mailto:ilbeomseo@hanafn.com)

PROFILE

- 하나은행 언주로 지점 지점장
- 前 하나은행 법인영업부 부장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mailto: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Customs Precedent 68

바우처 사용을 통한 할인의 관세평가상 인정여부



신중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mailto:j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2팀
- FTA 원산지 컨설팅

Shinhan News



PROFILE

서영진 상무

[wedin8@customsservice.co.kr](mailto:wedin8@customsservice.co.kr)

- 1991 년 서울세관 입사
- 1996 년 김포세관 수입과, 총무과
- 2000 년 인천공항세관 수입과
- 2002 년 인천세관 수입과
- 2006 년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평가
- 2008~2015 서울세관 심사관 기업심사, 종합심사

## 신한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흔 중반을 넘긴 많지 않은 나이에 2015년 2월말 서울세관에서 세관공무원을 마감하고 올해 창립50주년을 맞는 신한관세법인에서 3월 2일부터 상무 겸 관세 컨설팅본부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구)김포세관에서 수입 통관과 징수업무, 운영업무, 2006년~2008년까지 관세청 심사정책에서 관세평가 제도와 사후관리제도업무, 2008~2015년까지 서울세관 심사국에서 기업심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글로벌기업, 많은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심사를 주로 담당했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사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veryone can be great because everyone can serve.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위대하다.) MARTIN LUTHER KING, JR.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일류기업에 최고의 관세서비스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열의와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없는 연구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극심을 가지고 항상 즐겁게 일하면서 만나는 고객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Cover Story

## 3월 31일 폐기물부담금 신고 잊지 마세요!

폐기물부담금의 실적자료 제출기한이 다가왔다.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2014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을 이번 달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은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검,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다만, 수출용 물품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물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신고대상자가 된다.

구분	부과대상물품
플라스틱 물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최종단계의 제품)
일반 물품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검,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은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경우에도 대상제품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발(뒷굽 및 깔창),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분이 플라스틱인 경우에도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엔 플라스틱 순중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제품의 전체중량이 아닌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순중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산정된다.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도 직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상 물품이라도 비대상임을 신고해야 하므로 증빙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경우 최종단계의 제품만 부과대상이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비대상에 해당한다.

구분	폐기물부담금 산정방식
플라스틱 물품	[제품의 플라스틱 투입량(kg)-감면량(kg)] x 부과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일반 물품	2014 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 x 부과율·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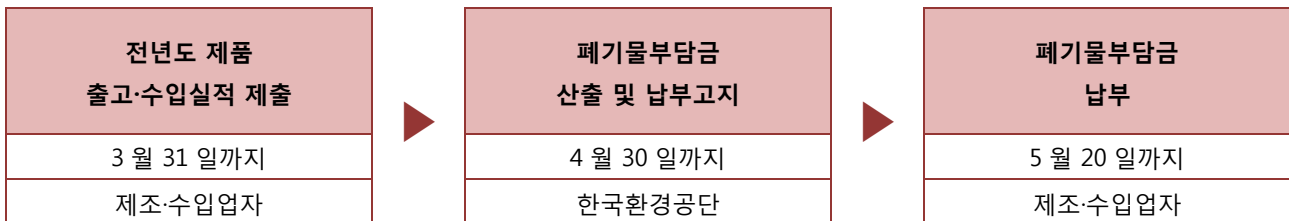
폐기물부담금은 출고·수입실적에 부과율·금액과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부과율·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부담금산정지수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정해지고 2014 년도의 경우 1.1587 이다. 한편, 플라스틱의 경우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액기준 미화 9 만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3 톤, 제조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 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 톤에 대하여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경공단에서 신고요청에 들어가며 이후에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공단의 납부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독촉과 함께 2~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을 받은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출고·수입실적 신고기한은 3 월 31 일까지이며, 신고대상업체는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www.budamgum.or.kr](http://www.budamgum.or.kr))을 통해 출고·수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mailto:hrkim@customsservice.co.kr)



## FTA 역외가공 규정과 개성공단

### 1. 개요

FTA 에서 어떤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생산기준'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재료로 협정 당사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세번변경기준'은 협정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원재료의 세번이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되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영역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역외가공 규정은 영역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역외에서 수행된 공정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라도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에서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이며 현재 124 개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존 체결된 FTA 의 역외가공 조항과 해당 규정의 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2.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의 역외가공 조항

현재 우리나라는 11 개국과의 FTA 를 발효 중에 있다. 이들 중 개성공단 가동 이전에 체결된 칠레와의 FTA 를 제외하고는 모두 역외가공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EU, 터키, 호주 그리고 캐나다와의 FTA 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후 논의한다는 조항만이 있을 뿐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협정을 제외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및 페루와의 협정에서는 하기 표와 같이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각 협정 별로 각기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FTA 별 역외가공 조항 비교]

구 분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콜롬비아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허용지역		개성공단	양 당사국	모든 지역, 양 당사국 적용	개성공단 등	개성공단	개성공단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우 논의
적용대상품목 (HS 6단위)		4,625개 품목	134개 품목	제한 없음	267개 품목	ASEAN 국별 100개 품목	108개 품목	100개 품목	
별도 원산지 기준	비원산지 투입 요소 총 가치	한국에서 수출	최종품 관세가격 40% 이하	최종품 EXW 가격 10% 이하	최종품 EXW 가격 40% 이하	최종품 FOB 가격 40% 이하	최종품 FOB 가격 40% 이하	최종품 FOB 가격 40% 이하	
	수출 원산지재료 가치		최종품의 관세가격 45% 이상		역외가공물품 총 재료비 중 60% 이상	역외가공물품 총 재료비 중 60% 이상	역외가공물품 총 재료비 중 60% 이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 동시 충족 여부		충족 필요 없음		충족 필요		충족 필요 없음		충족 필요	
근거규정		제4.3조 및 부속서 4B	제4.4조 및 부속서 4C	부속서 제13조 및 부속 4 제1조 외	부속서 1 제13조 및 부속 4 제2조 외	부속서3 제6조 및 양해각서	제3.14조 부속서 3-나	부속서3-나	

\*출처 : 자유무역협정 역외가공 규정 분석과 FTA 활용방안 고찰, 이영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4.10월

3. FTA 역외가공 조항 활용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하여 역외가공품에 적용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협정(ASEAN, 인도, 페루 등)의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발급실적은 전무하여 역외가공 규정은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성공단 물품이 주로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인 호주(29.3%), 러시아(14.7%), 중국(14.3%) 등 북한과의 수교국가 위주로 수출된다는 점이다<sup>1</sup>. 둘째,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하다. 역외가공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과는 별개로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역외가공 인정요건이 복잡하고 어려워 인력과 비용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외가공 허용 품목이 협정마다 상이하다는 점이다. EFTA 에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품목이 ASEAN 국가에서는 허용이 안될 수 있고, ASEAN 도 각 국가마다 허용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4. 향후 전망

지난 2 월 25 일 한-중 FTA 의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된 협정문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에서 언급한대로, 310 개의 한반도 역외가공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 FTA 가 발효되면 개성공단이 한중 무역의 생산기지이자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중 FTA 의 역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또한 다른 협정과 비슷한, 다소 복잡한 구조의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 FTA 의 발효까지는 정식서명, 국회비준 및 발효 등의 절차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성공단 생산물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원산지판정시스템 구축 등 FTA 역외가공 규정의 활용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동 현  
([leedh@customsservice.co.kr](mailto:leedh@customsservice.co.kr))

<sup>1</sup> 자유무역협정 역외가공 규정 분석과 FTA 활용방안 고찰, 이영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4.10 월

# Voices From The Fields

## 질문의 힘

**을**해로 하나은행 지점장 12년 차다. 본점에서 법인영업부장을 7년 반을 했으니, 직장인으로는 할 만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직장생활을 즐기며, 작은 성공을 이룬 것은 감사할 일이다. 은행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업무를 무난히 수행한 방법 중의 하나가 질문을 활용한 것이다.

질문의 효과는 생각하게 하고, 답하도록 압력을 준다는 것이다.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으면 답하는 학생과 같다. 즉, 질문에는 사고와 답을 강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질문의 특성 때문에 6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①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②남의 호감을 얻는다. ③남의 마음을 움직인다. ④사람을 키운다. ⑤논쟁을 주도한다. ⑥자신을 통제한다.

목적에 따라 질문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질문은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하여 80~90%를 알고 있고, 10~20%를 모를 때 하면 유용하다, 내가 대부분은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한다. 내가 80~90%를 모르면 질문에 힘이 없다. 날카로운 질문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몫이다.

질문의 기본 배경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모를 수 있다. 나 보다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질문을 할 수 있다. 한

명의 엘리트보다 대중이 더 똑똑하고, 현장의 직원이 참여하고, 빠른 시간에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어야 질문을 한다. James Surowiecki 가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의견의 다양성, 의견의 독립성이 전제될 때, 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전쟁 역사에서 묻지 않아서 패한 전투가 있을까? 칠천량 해전이다. 1597년, 명량대첩이 발발하기 두 달 전 조선해군은 거제도 인근 해협에서 벌어진 칠천량 해전에서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 이순신 장군이 13 척의 배로 133 척의 일본수군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전사를 쓰는 소재를 제공했지만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금 선조가 원균과 이순신에게 '이번 전투가 승산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를 직접 물어봤으면 무모한 전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좋은 질문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다. 임원들에게  
① 요즘 뭐하나? ② 문제 없나? ③ 우짤 낀데? 라고

물었다고 한다. 요즘 임원이 하는 일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임원이고, 목표가 크면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임원이 필요 없는 긴장된 질문이다. 그야말로 각각의 질문이 가시가 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임원의 모습을 만든 질문이기도 하다.

혼다 소이치로의 '3 현주의(三現主義)'도 질문으로 시작된 경영방법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현장에 가서 현물을 보고 현실적 대안을 찾으라는 혼다의 경영철학이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질문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요즘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은행 언주로지점  
지점장 서일범  
([ilbeomseo@hanafn.com](mailto:ilbeomseo@hanafn.com))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사유

관세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의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과 휴대품 등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개정내용

####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제31조제4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과 재심사 신청의 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확대(제39조

#### 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다.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제92조제6항 신설)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용도와

적용하려는 세율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자연재해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범위의 확대(제119조제2호)**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 경감액에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마. 개항 지정요건의 강화(제155조의2제3호가목 신설)**

개항의 지정요건 중 공항의 여객수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관세청장 고시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이영으로 옮겨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되,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의 기준을 종전의 연간 1만 5천명 이상에서 연간 4만명 이상으로 강화함.

**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마련(제231조의2 신설)**

-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 2) 세관장은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 규모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의 예외 신설(제236조 제1항 단서 신설)**

조약 등에 따라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치(제245조의2 신설)**

-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무역원활화 추진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과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도록 함.

**자.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범위의 규정(제245조의5 신설)**

- 1)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와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 및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 2) 관세청장은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 시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차. 휴대품 신고의 반복적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가중사유 규정(제247조제4항 신설)**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 등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이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자 : 2015년 2월 6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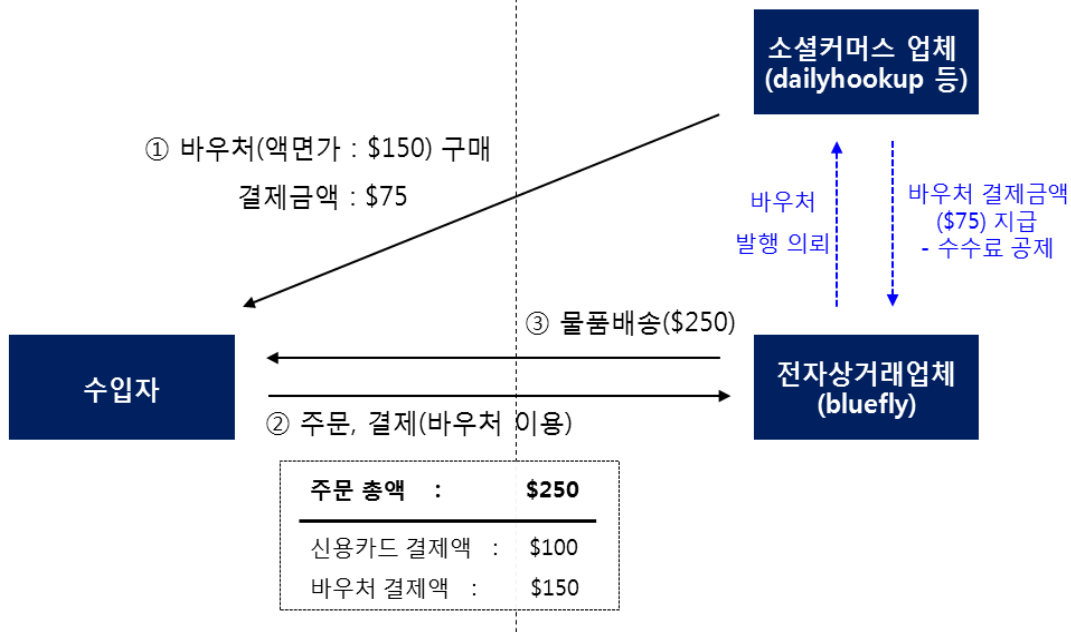
## 바우처 사용을 통한 할인의 관세평가상 인정여부 (2013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안건1)

### I. 사실관계

#### □ 거래내용 및 운송흐름

국내

해외



- 수입자는 전자상거래업체(bluefly)가 발행한 바우처(액면가 : \$150)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75 에 구매
- 수입자는 구매한 바우처를 이용하여 물품(\$250)을 구매
- 물품 액면가격은 \$250 임.
- 바우처로 \$150 를 결제하고, 차액인 \$100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지불
- \*수입자는 바우처를 통해 \$75 할인(\$150-\$75)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전자상거래업체 물품 발송 / 수입자 수입신고
- 수입 물품의 송품장에는 할인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액면가 \$250 가 기재
- 바우처의 성격
-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판매
- 전자상거래업체(bluefly)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
- 1 회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을 남길 수 없으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150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야 이익 극대화 가능

•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sup>1</sup>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소셜'(social)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상의 사회관계망 또는 그 미디어를 뜻하며, '커머스'(commerce)는 상업, 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소셜 커머스 분야에 해당한다.

-상품의 할인 폭이 50% 이상 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쿠폰 판매 자체는 소매업체에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커머스 방식으로 상품 판매를 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 때문이다. 마땅한 광고수단이 없는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쿠폰을 판매함으로써 일정 기간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쿠폰을 소진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해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소비자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구매후기를 남김으로써 상당 기간 광고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II 쟁점

바우처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III. 결정

• 거래에 대한 검토에 따라, 관세법 제 30 조 3 항에 규정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가능

-당해 바우처는 비록 일부 사용상 제한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 구매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였고,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한 거래가 비록 판매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특별할인에 해당하더

라도, **이러한 거래형태는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상거래**로 볼 수 있는바, 관세법 제 30 조제 3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IV. 해설

□ **상관행의 존중과 관세평가의 원칙으로써의 거래 가격**

•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일반서설에서 “관세목적의 상품 평가의 기초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상품의 거래 가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관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공급원간의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평가 절차가 덤핑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라고 규정하며, **일반적인 상관행에 대한 관세평가에서 존중해야 함과,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또한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ADVISORY OPINION) 2.1 에서는 “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 1 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가격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낮다는 사실만으로 관세법상 1 평가방법(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 **“할인”에 대한 접근**

• 물품에 대한 할인이 관세평가상에 야기하는 문제는 “할인에 상당하는 금액(할인금액)”이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특정한 할인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려면 그 할인액이 가산요소에 해당하거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격할인의 문제는 할인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

- 관련하여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관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관세법 제 30 조 일부)”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어떤 반대급부이며, 할인은 “(물건 따위) 값을 깎아 주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는 할인금액은 당연히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 금액의 일부일 수 없다.
- 법령규정의 해석상 할인금액 그 자체를 실제지급

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할인 논의의 실익은 할인된 후의 가격을 해당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있다.

- 즉, 할인 후의 가격이 관세법 30 조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과세가격 배제사유<sup>2</sup>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종 호

[jhshin@customsservice.co.kr](mailto:jhshin@customsservice.co.kr)

<sup>1</sup> "소셜 커머스"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2s2253n11](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2s2253n11)>

<sup>2</sup> 관세법 제 30 조 3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부터 제 3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 1 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③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 1 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